

『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등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도모하고,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에 따라 방재단장 선출 방법 및 방재단 소집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9조)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단원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9조, 제11조)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 사항 신설 등 별지 서식 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효율적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